

인천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6가합56607 판결 [구상금청구등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현

피고1. D

2. E

3. F

4. G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태성, 심진섭

5. H

변론 종결 2019. 9. 27.

판결 선고 2019. 11. 22.

주 문

- 가.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11,927,979원, 피고 E는 각 4,559,500원, 피고 F는 각 2,137,2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피고 G은 원고 A, B에게 각 84,676,022원과 그 중 24,629,444원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0,046,578원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86,941,492원과 그 중 24,629,444원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2,312,048원에 대하여는 2018. 4. 27.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 F,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 A, B에게, 피고 D은 각 11,927,979원, 피고 E는 각 4,559,500원, 피고 F는 각 2,137,266원, 피고 G은 각 118,659,242원, 원고 C에게, 피고 D은 11,927,979원, 피고 E는 4,559,500원, 피고 F는 2,137,266원, 피고 G은 120,924,71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1)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H은 김포시 I 임야 11,828m² 중 원고들의 각 1/15 지분에 관하여 2014.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642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J(2005. 6. 11.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 D, E, F, G(이하 통틀어 '피고 D 등'이라 한다)과 망 J은 망 K(2010. 2.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피고 D 등은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 H은 망인의 사촌형제의 손자로서 피고 D 등과 육촌 관계이다.

나. 상속세 부과 및 그 내역 등

1) 원고들은 피고 G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고 한다) 신고, 납부 등 업무를 위임하였다.

2) 피고 G은 2010. 8. 31. 피고 D 명의로 강서세무서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9,117,186,940원(= 총 상속재산가액 1,918,452,440원 - 공제금액 10,000,000원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7,208,734,500원), 과세표준을 8,597,186,940원, 산출세액을 3,838,593,470원, 세액공제액을 1,360,386,392원, 자진 납부할 세액을 2,478,207,078원으로 산정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자진 납부할 세액 중 413,100,008원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였다.

3) 이에 강서세무서장은 원고들 및 피고 D 등에 대하여 2,478,207,078원을 이 사건 상속세로 결정하고, 위 금액에서 기납부된 413,100,008원을 차감한 2,065,107,07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가, 2011. 12. 16.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누락 상속재산 1,086,827원 및 사전증여재산 1,001,280,340원을 반영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이 사건 상속세를 2,699,125,662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증액된 부분 220,918,584원(= 위 2,699,125,662원 - 2,478,207,078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① 상속재산	부동산2) 김포시 L 임야 3,075m ² , I 임야 11,828m ² , M 전 1,964m ² , N 임야 317m ² , O 임야 4,121m ² (2013. 1. 3. O 임야 2,505m ² , P 임야 1,056m ² , Q 임야 560m ² 로 분할됨), R 임야 1,386m ²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예금, 보험금 등합계	1,877,511,500원42,027,767원1,919,539,267원
②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없음	

① 상속재산	부동산2) 김포시 L 임야 3,075m ² , I 임야 11,828m ² , M 전 1,964m ² , N 임야 317m ² , O 임야 4,121m ² (2013. 1. 3. O 임야 2,505m ² , P 임야 1,056m ² , Q 임야 560m ² 로 분할됨), R 임야 1,386m ²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예금, 보험금 등합계	1,877,511,500원42,027,767원1,919,539,267원
③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상속인 외합계	4,049,803,840원4,160,211,000원8,210,014,840원
④ 장례비용 등	합계	10,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①+②+③-④)	합계	10,119,554,107원

상속세 과세가액	10,119,554,107원
상속공제	520,000,000원
과세표준	9,599,554,107원
세율	50%
산출세액	4,339,777,053원
증여세액공제	1,429,394,536원
신고세액공제	275,356,342원
결정세액	2,635,026,17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1,893,90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205,584원
총 결정세액	2,699,125,662원

2.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

D	20.00	44,183,716	0
E	20.00	44,183,716	0
F	20.00	44,183,716	0
G	20.00	44,183,716	0
A	6.67	14,727,907	0
C	6.67	14,727,907	0
B	6.66	14,727,906	0

4) 이 사건 상속세로 2010. 8. 31.부터 2017. 3. 16.까지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 가산금을 합쳐 합계 3,053,236,850원(= 상속세 및 이자 2,960,928,710원 + 가산금 92,310,140원)이 납부되었다.

다. 피고 H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한편,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김포시 I 임야 11,828m²에 관하여, 2010. 8. 27. 원고들 앞으로 각 1/15 지분에 대하여, 피고 D 등 앞으로 각 1/5 지분에 대하여 각 2010. 2.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8. 6. 원고들 및 피고 E, F, G의 위 각 지분에 대하여 피고 H 앞으로 2014. 8.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피고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 등은, 아직 이 사건 상속부동산 전부가 처분되지 않았는바 그 처분가액의 이 사건 상속세 등 납부를 위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 및 피고 F의 개인채무 변제액, 피고 G의 출연액과의 상계 후 배분을 위한 청산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D 등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D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 채무 중 원고들의 출연금으로 피고 D 등이 면책된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고 G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 등 업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남은 비용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공동상속재산이 모두 처분된 뒤에야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D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 D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 D 등이 이 사건 상속세를 분담할 비율을 산정하면, 원고들 합계 0.1575, 피고 D 0.2161, 피고 E 0.1799, 피고 F 0.1680, 피고 G 0.2785가 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2010년경 현금 120,000,000원, 2011년경 현금 120,000,000원, 피고 G이 원고들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김포시 R 토지, 분할 후 O 토지 및 P 토지를 처분하여 받은 대금 합계 3,751,810,000원 중 원고들 지분 합계 1/5에 상당하는 750,362,000원, 합계 990,362,000원³⁾ 을 출연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총 납부된 이 사건 상속세액 3,053,236,850원은 원고들 및 피고 D 등이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모으고 동일한 지분의 상속부동산들을 처분함으로써 균등하게 출연한 돈에서 납부된 것이므로, 위 상속세액 중 원고들, 피고 D 등이 각 납부한 금액은 위 3,053,236,850원의 1/5에 해당하는 610,647,370원이다.

위 각 납부액을 가지고 앞서 산정한 상속세 분담비율대로 원고들, 피고 D 등이 이 사건 상속세납부의무를 면책시킨 액수를 계산하면, 원고들 각자 피고 D이 분담해야 할 11,927,979원, 피고 E가 분담해야 할 4,559,500원, 피고 F가 분담해야 할 2,137,266원, 피고 G이 분담해야 할 24,629,444원을 각 더 납부한 셈이 되어 피고 D 등에 대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므로, 피고 G 등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등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 D 등의 상속세 분담비율은 강서세무서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서 정한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원고들 각 0.0667, 피고 D 등 각 0.2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연액 중 2011년경 현금 100,393,114원에 불과하고, 출연한 현금 중 84,000,000원을 피고 G으로부터 돌려받았다가 다시 7,000,000원을 재출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출연액은 상속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의 처분대금 750,362,000원을 더하더라도 893,755,114원에 그치며, 납부된 상속세 중 합계 915,065,570원의 납부분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현금 중 220,393,114원을 포함하여 피고 D이 220,393,114원을, 피고 G이 474,279,342원을

직접 출연한 것이다.

나) 판단4) (1) 관련 법리

(가)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 참조). 구 상속세법 제3조 제1항은 공동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상속세납부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일부 공동면책된 때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참조), 이때 상속세납부의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5)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

(나) 이에 따라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6)은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FORMULA: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 계산식(이미지 생략)

FORMULA: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과세표준(이미지 생략)

(2) 상속세 부담비율의 산정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세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D 등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앞서 본 강서세무서의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기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법정상속지분이 아니라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그 계산에 필요한 항목은 별지 상속세 부담비율 산정 내역 제1항 기재와 같고, 같은 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해당 항목의 내용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에 대한 2017. 4. 7.자 및 2019. 6. 17.자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다만, 계산상 착오로 보이는 상속인별 증여재산가액 부분 등은 적절히 수정하기로 한다), 이를 기초로 상속세 부담비율을 계산하면 같은 내역 제3항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피고 D 등의 각 상속세 납부액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액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 등이 원고들 주장의 총 출연액 중 현금 부분의 액수에 대하여 220,393,114원이라고 다투기는 하나, 2019. 3. 4.자 준비서면에서 총 납부 상속세액의 1/5인 610,647,370원이 원고들의 부담액이고, 원고들은 이를 포함한 총 1,262,494,953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 위 현금 220,393,114원을 비롯하여 (위 610,647,370원을 초과하는) 893,755,114원을 출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로 610,647,370원을 납부하였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 D 등의 각 상속세 납부액에 관하여, 원고들이 원고들 및 피고 D 등이 균등하게 납부한 것을 전제로 주장하는 610,647,370원이 피고 D 등이 특정한 피고 D의 일부 출연액 220,393,114원, 피고 G의 일부 출연액 474,279,342원을 넘는 금액이고, 피고 D 등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액수나 산정 방법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각각의 상속세 납부액의 출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나 피고 D 등 사이에 출연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 등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D 등도 이 사건 상속세로 각 610,647,3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위에서 본 원고들 및 피고 D 등의 각 상속세 납부로 인한 공동면책액 중 당사자별 부담부분을 상속세 부담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7)

원고 들	610,647,370 원	0.12920 8	78,900,525 원	155,127,025 원	103,604,875 원	93,311,192 원	179,702,529 원
피고 D	610,647,370 원	0.25403 7	78,900,525 원	155,127,025 원	103,604,875 원	93,311,192 원	179,702,529 원
피고 E	610,647,370 원	0.16966 4	78,900,525 원	155,127,025 원	103,604,875 원	93,311,192 원	179,702,529 원

원고 들	610,647,370 원	0.12920 8	78,900,525 원	155,127,025 원	103,604,875 원	93,311,192 원	179,702,529 원
피고 F	610,647,370 원	0.15280 7	78,900,525 원	155,127,025 원	103,604,875 원	93,311,192 원	179,702,529 원
피고 G	610,647,370 원	0.29428 2	78,900,525 원	155,127,025 원	103,604,875 원	93,311,192 원	179,702,529 원

(나)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납부액 중 피고 D의 부담부분 155,127,025원에서 피고 D의 납부액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 78,900,525원을 제외한 76,226,500원을, 피고 E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납부액 중 피고 E의 부담부분 103,604,875원에서 피고 E의 납부액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 78,900,525원을 제외한 24,704,350원을, 피고 F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납부액 중 피고 F의 부담부분 93,311,192원에서 피고 F의 납부액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 78,900,525원을 제외한 14,410,667원을, 피고 G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납부액 중 피고 G의 부담부분 179,702,529원에서 피고 G의 납부액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 78,900,525원을 제외한 100,802,004원을 각 초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 초과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구상금으로, 피고 D은 각 25,408,833원($= 76,226,500원 \div 3$)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11,927,979원을, 피고 E는 각 8,234,783원($= 24,704,350원 \div 3$)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4,559,500원을, 피고 F는 각 4,803,555원($= 14,410,667원 \div 3$)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2,137,266원을, 피고 G은 각 33,600,668원($= 100,802,004원 \div 3$)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24,629,444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개별 상속인의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을 공제한 후 위 상속세 부담비율을 적용한 상속세 부담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구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제56조에 따라 개별 상속인의 사전 증여세액 및 신고세액을 공제한 액수와, 가산세에 위 상속세 부담비율을 적용한 액수를 합한 금액이 총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0.1575가 원고들의 최종적인 상속세 부담비율이 되고, 위 부담비율을 기초로 당사자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여 구상관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D 등 사이에 각자 부담할 상속세의 액수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구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취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세의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위 조항에 의하여 산출된 값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결정세액이 이미 증여세액 공제, 신고세액 공제, 가산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총 납부 상속세액에 위 조항에 따른 상속세 부담비율을 곱하여 원고들, 피고 D 등의 부담부분을 정하더라도 부당해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G에 대한 상속세 납부 등 업무 위임 관련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출연한 합계 990,362,000원은 피고 G이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 등 업무의 수임인으로서 관리하였다. 그런데 위 출연액에서 위와 같이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610,647,370원 및 아래와 같이 피고 G이 위임사무를 위해 정당하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원고들이 인정하는, 상속재산 처분 전 납기가 도래한 상속세분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법정이자 중 원고들 부담액 7,526,334원, 상속등기, 부동산 중개료 등 상속재산 처분 관련 비용 중 원고들 부담액 20,099,432원, 상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납부된 양도소득세 중 원고 A, B 직접 납부분 각 23,336,490원, 원고 C 직접 납부분 21,071,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는, 피고 G이 수임인으로서 민법 제685조에 따라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거나, 위임사무와 무관하게 소비하여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거나, 피고 H으로부터 고리로 금전을 차용하고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681조,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나머지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의 주장 요지

피고 D은 상속세 납부 등 업무의 수임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 취득 및 보전·관리와 상속세 등 세금납부 등을 위해 필요한 총 6,125,158,789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출연액은 893,755,114원에 불과하고, 위 출연액 중 220,393,114원, 피고 D이 출연한 220,393,114원, 피고 G이 출연한 474,279,342원, 합계 915,065,570원의 상속세 납부액에 총 상속부동산 처분대금 3,751,810,000원을 더한 공동상속인 전체 출연액 4,666,875,570원 모두가 위 비용 지출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

1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61,211,900
2	이 사건 상속세 총 납부액	3,053,236,850
3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김포시 O 토지, R 토지, P 토지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630,968,520
4	위 3항의 처분에 따른 지방양도소득세	50,458,417
5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와 상속세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대출 과정에서 피고 G 소유 서울 강서구 S 상가, 서울 강서구 T 토지, 인천 강화군 U 토지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가압류 취소 관련 법무사 보수, 공과금 등 등기비용	26,406,590
6	이 사건 상속세의 세무신고, 절세 등의 용역에 대한 세무사 특별보수	70,000,000
7	위 김포시 R 토지 처분 관련(공인중개사 V)	15,000,000
피고 G 소유 인천 강화군 U 토지 처분 관련(공인중개사 W)	35,000,000	
피고 G 소유 서울 강서구 S 대지 및 상가 처분 관련(공인중개사 X)	10,000,000	
8	위 김포시 O 토지, R 토지 처분을 위한 무연고 분묘이장비용(Y회사 Z)	13,200,000
9	위 8항의 처분 관련 산지전용 ·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비용(AA회사 AB)	10,280,000
10	이 사건 상속부동산 처분을 위한 산지전용 관련 부담금(면허세, 복구 예치금, 지역개발공채, 이행보증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24,786,560
11	이 사건 상속부동산 처분을 위한 농사용 전기증설공사비용(한국전력공사)	242,000
12	위 8항의 처분을 위한 도로 측량 · 개설비용(개발업자 AC)	21,500,000
13	원고들이 동의한 피고 F의 딸 AD의 혼수비용, 아들 AE의 이사비용 부조	32,000,000
14	이 사건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강서세무서의 피고 G 소유 서울 강서구 S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위한 비용	7,063,540
15	원고들이 동의한 이 사건 상속부동산의 피고 F 지분에 대한 가압류 관련 채무들의 변제	609,500,000
16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납부를 위한 AF조합에 대한 총 3,550,000,000원 대출금의 이자	421,542,998
17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납부를 위한 피고 H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694,373,520
18	양도소득세 납부, 대출금 변제를 위한 피고 G 소유 인천 강화군 U 토지, 서울 강서구 S 토지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456,543,880
19	위 18항의 처분에 따른 지방양도소득세	69,159,990
합계	6,312,474,765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그 이자까지도 지급하여야 하며(민법 제684조, 제685조),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업무처리비용으로 금원을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수임인으로서 그 받은 비용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있다면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그러한 비용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851 판결).

(2) 위임계약 종료에 따른 비용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가) 원고들이 피고 G에게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납부 등 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의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위임계약은 적어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G에게 송달된 2016. 9. 30. 무렵에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위임계약에서 비용의 반환에 관하여 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G은 위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남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G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2010년경 현금 120,000,000원을 출연하여 이를 피고 G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현금 중 피고 G이 자인하는 100,393,114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출연액은 위 100,393,114원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11년경 현금 120,000,000원, 이 사건 상속부동산 일부의 처분대금 3,751,810,000원 중 원고들 지분 1/5 상당액 750,362,000원을 합한 970,755,114원으로 인정된다(한편, 피고 G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2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2014. 5. 8. 원고 A의 남편 AG의 계좌로 10,000,000원, 원고 C의 남편 AH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고, 다시 원고 A가 AG을 통해 7,000,000원을 재출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출연액은 피고 G이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인 원고들로부터 상속세 납부 등 업무의 처리비용으로 선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 G이 위임사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 G은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선지급받은 업무처리비용을 이 사건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 G이 주장하는 각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순번 1 내지 5, 7, 8, 10, 14, 16에 관하여는, 아래 각 증거 등에 피고 G과 원고들은 밀접한 인적 관계에서 보수에 관한 약정 없이 위임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피고 G과 사전에 상속세 납부 등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처리방법 등을 협의하였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지출항목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다른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는 한 피고 G이 해당 금액을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아래 각 인정금액의 범위에서 받아들인다. 한편, 순번 6, 9, 11 내지 13, 15, 18, 19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G이 해당 금액을 상속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취득세, 등록세	61,211,900	원고들 자백 또는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12,242,380
업무처리비용의 분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 상속지분 합계 1/5에 상당하는 위 금액만을 원고들에 관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상속세	3,053,236,850	위 1)의 나)의 (3)에서 본 바와 같다(판결문 11쪽).	610,647,370
3, 4	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	630,968,520	원고들 자백 또는 을가 제3, 4, 15호증, 제16호증의 2, 3, 제17호증의 2,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에 대한 2017. 9. 21.자 및 국세청에 대한 2017. 10. 31.자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원고 A: 23,336,490, 원고 B: 23,336,490, 원고 C: 21,071,020

1	취득세, 등록세	61,211,900	원고들 자백 또는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12,242,380
지방양도소득세 (상속부동산)	50,458,417			
원고들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위 금액 외의 나머지 부분은 위 증거만으로는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부과된 구체적인 세액 및 피고 G의 대납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5	등기비용	26,406,590	원고들 자백 또는 을가 제8, 34호증의 각 기재	1,521,540
원고들이 인정하는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비용 7,607,700원 중 1/5에 상당하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증거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명목으로 얼마나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6	상속세 절세 특별보수	70,000,000	을가 제30호증의 기재	0
위 증거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7	중개수수료	15,000,000	원고들 자백 또는 을가 제16호증의 1, 을가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	3,000,000
35,000,000	을가 제21호증의 기재	0		
10,000,000	을가 제22호증의 기재	0		
원고들이 인정하는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1/5에 상당하는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증거만으로는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8	무연고 분묘이장비용	13,200,000	원고들 자백 또는 을가 제11, 34호증,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	2,516,000
원고들이 인정하는 산출내역서(을가 제11호증의 2)에 기재된 10,580,000원의 1/5에 상당하는 2,116,000원과, 2015. 10. 13. Y회사 측에 지급한 2,000,000원도 분묘이장비용으로서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그 1/5에 상당하는 400,000원을 합한 위 금액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취득세, 등록세	61,211,900	원고들 자백 또는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12,242,380
9	형질변경비용	10,280,000	을가 제11, 34호증의 각 기재	0
위 증거만으로는 부동산 처분을 위해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0	산지전용 관련 부담금	24,786,560	원고들 자백 또는 을가 제12호증의 기재	4,957,312
주장금액 중 1/5에 상당하는 위 금액을 받아들인다. 원고들은 지역개발공채는 보통의 경우와 같이 구입 후 되팔았을 것이고, 복구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비용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11	전기증설공사비용	242,000	을가 제13호증의 기재	0
위 증거만으로는 비용의 액수와 용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2	도로 측량 개설비용	21,500,000	을가 제24호증의 기재	0
위 증거만으로는 비용의 액수와 용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3	피고 F 자녀 부조	32,000,000	을가 제21호증의 2, 을가 제30, 35호증의 각 기재	0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명목의 지출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4	공매처분 취소비용	7,063,540	을가 제28호증의 기재	1,412,708
주장금액 중 1/5에 상당하는 위 금액을 받아들인다.				
15	피고 F 채무 변제비용	609,500,000	을가 제14호증의 4, 제31, 35, 36호증의 각 기재	0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명목의 지출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6	AF조합 대출금 이자	421,542,998	을가 제5, 18호증의 각 기재	84,308,599
주장금액 중 1/5에 상당하는 위 금액을 받아들인다. 원고들은 상속부동산을 처분하여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상속세분에 대하여만 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은 총 829,625,400원이며, 출채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위해 다른				

1	취득세, 등록세	61,211,900	원고들 자백 또는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12,242,380
데에서 차용·조달하였더라도 실제 차용이자와 관계없이 법정이자 상당액만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37,631,673원이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 G에게 언제나 대출의 제약이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위임관계에서 피고 G에게 잔여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위 비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7	피고 H 차용금 이자	694,373,520	피고 H의 주장	0
피고 H의 주장 외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위 주장금액 모두가 피고 G의 위임사무처리를 위한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8, 19	양도소득세 (피고 G 부동산)	456,543,880	을가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0
지방소득세 (피고 G 부동산)	69,159,990	0		
위 증거만으로는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 G이 반환하여야 할 잔여 비용의 액수는, 원고들의 산정 방식에 따라(피고 G도 특별히 이의하지 않고 있다) 위 출연액 970,755,114원에서 위 순번 3, 4를 제외한 나머지 인정금액 합계 720,605,909(= 순번 1 12,242,380원 + 순번 2 상속세 610,647,370원 + 순번 5 1,521,540원 + 순번 7 3,000,000원 + 순번 8 2,516,000원 + 순번 10 4,957,312원 + 순번 14 1,412,708원 + 순번 16 84,308,599원)을 공제한 250,149,205원을 원고들에게 동일하게 나누고, 다시 순번 3, 4의 원고별 인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고 A, B에 대하여 각 60,046,578원 [= (250,149,205원 ÷ 3) - 23,336,490원], 원고 C에 대하여 62,312,048원 [= (250,149,205원 ÷ 3) - 21,071,020원]이 된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 의무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 G에게 비용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거나, 피고 G이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①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위 11,927,979원, 피고 E는 각 위 4,559,500원, 피고 F는 각 위 2,137,2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특례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원고들은 이 사건 2018.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 G은 원고 A, B에게 각 84,676,022원(= 위 구상금 24,629,444원 + 위 비용 60,046,578원)과 그 중 24,629,444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2018.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위 60,046,578원에 대하여는 위 2018. 4. 27.부터 피고 G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86,941,492원(= 위 구상금 24,629,444원 + 위 비용 62,312,048원)과 그 중 24,629,444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2018.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2,312,048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2018. 4. 27.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상속세 납부 등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상속등기 용도로 인감도장을 교부받게 됨을 기화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 H과 짜고 어떠한 원인행위도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위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무권리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H의 주장 및 증거에 의하더라도 최대 818,172,200원의 대여금인데, 피고 H은 피고 G이 대여금 중 1,119,96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 그 반환금액이 위 대여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H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이 무효인지 보건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H과 피고 G이 통정하여 허위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김포시 R 토지에 대하여 원고 C의 지분을 제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만으로는 피고 G이 원고들의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무권리자의 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지 보건대,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4. 2. 17. 피고 H과 피고 G 사이에 기존의 2012. 8. 31.자 785,000,000원 대여계약(만기 2013. 12. 31., 이율 월 1%)의 만기를 2014.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2013. 10. 8.자 100,000,000원 대여계약(만기 2013. 12. 27., 이율 월 1%), 2013. 10. 30.자 250,000,000원 대여계약(만기 2013. 12. 27., 이율 월 1.5%), 2013. 12. 30.자 230,000,000원 대여계약(만기 2014. 2. 15., 이율 월 2%)의 각 만기를 2014. 6. 3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각 작성된 점, 위 연장된 만기 2014. 6. 30.로부터 가까운 2014. 8.경 법무사 AI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업무를 의뢰받았고, 2014. 8. 6.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 H은 2016. 4. 29. 피고 G에게 2016. 4. 25. 현재 935,000,000원의 차용금 원금 채무가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 H이 자인하는 내용은 2011. 10. 1.부터 2015. 4. 20.까지 총 대여금 2,055,000,000원 중, 2013. 7. 9.부터 2015. 5. 18.까지 원금에 대하여 합계 1,119,96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등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차은경

판사 김상우

판사 최민혜

별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2018. 4.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송달일부터"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택한다.

2) 김포시 L 임야 3,075m², I 임야 11,828m², M 전 1,964m², N 임야 317m², O 임야

4,121m²(2013. 1. 3. O 임야 2,505m², P 임야 1,056m², Q 임야 560m²로 분할됨), R 임야

1,386m²(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

3) 원고들은 990,372,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산상 착오로 보이므로 위 금액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모두 망 J을 피대습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인으로서, 구상금 액수 산정에 있어 계산 과정에서 자신들을 하나로 취급하여 구상금액을 도출한 뒤 이를 원고별로 동일하게 나누는 금액을 최종적인 청구금액으로 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D 등도 다투지 않고, 위 피고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점도 없어 보이므로, 위 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5)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7) 다만, 각 당사자별 부담부분의 합이 상속세 납부액과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원 미만 액수를

버리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구상금 산정에 있어 위

각 부담부분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다.